

#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(갑)

(      년      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	처리기간	즉시
--	------	----

## 1. 신고자 인적사항

① 성명(법인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업태	④ 종목

## 2.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

구분	매입처수	건수	취득금액	매입세액 공제액
⑤ 합계				
⑥ 영수증 수취분				
⑦ 계산서 수취분				

## 3.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

가.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

매출액			대상액 한도계산		당기 매입액			⑩ 공제가능한 금액 (=⑫-⑭)
⑧ 합계	⑨ 예정분	⑩ 확정분	⑪ 한도율	⑫ 한도액	⑬ 합계	⑭ 세금 계산서	⑮ 영수증 등	

나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

⑪ 공제대상금액 (=⑬과 ⑭의 금액 중 적은 금액)	공제대상세액		이미 공제받은 세액			⑮ 공제 (납부)할 세액 (=⑮-⑯)
	⑫ 공제율	⑬ 공제대상 세액	⑭ 합계	⑮ 예정 신고분	⑯ 월별 조기분	

## 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(합계금액으로 기재,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)

일련 번호	⑰ 공급자		⑱ 구분 코드*	⑲ 건수	⑳ 품명	㉑ 수량	㉒ 차량번호 (중고자동차)	㉓ 차대번호 (중고자동차)	㉔ 취득금액
	성명 또는 상호(기관명)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				
	합계								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
\* 구분코드 : 1. 중고자동차, 2. 기타 재활용폐자원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.

신고인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     귀하

첨부서류	* 구비서류: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*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(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)에는 별지 제69호서식(2)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.
2. "⑤ 합계"란: "⑥ 영수증 수취분"란과 "⑦ 계산서 수취분"란의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.
3. "⑥ 영수증 수취분"란: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, "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"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4. "⑦ 계산서 수취분"란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, 건수, 취득금액,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,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5.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: 110분의10
  - 나.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: 103분의 3(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)
6. 중고자동차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  - 가.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
  - 나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(다른 그 밖의 관계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)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. 다만,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.
7. "3.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"란("⑥ 합계"란부터 "㉓ 공제(납부)할 세액"란까지): 중고자동차의 경우 작성하지 아니하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.
8. "⑧ 합계"란: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9. "⑨ 예정분"란: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10. "⑪ 한도율"란: 100분의 80(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)을 적습니다.
11. "⑫ 한도액"란: 매출액합계(⑨)에 한도율(⑪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2. "⑭ 세금계산서"란: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13. "⑯ 영수증 등"란: "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"란과 "⑦ 계산서 수취분"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4. "⑰ 공제가능한 금액"란: "⑫ 한도액"란에서 "⑭ 세금계산서"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, 음수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
15. "⑱ 공제대상세액"란: "⑰ 공제대상금액"란에 "⑯ 공제율"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16. "㉒ 합계"란: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7. "㉓ 공제(납부)할 세액"란: 예정신고 및 영세를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서식) 4쪽 중 제3쪽 (44)번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란에 음수(△)로 적습니다.
18. "4.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"("㉔ 공급자"란부터 "㉖ 취득금액"란까지):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으며, 공급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(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)에는 별지 제 69호서식(2)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19. "㉙ 차량번호"란 및 "㉚ 차대번호"란: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.

##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(을)

(      년      기)

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-	--

일련 번호	공급자		구분 코드*	건수	품명	수량	차량번호 (중고자동차)	차대번호 (중고자동차)	취득금액
	성명 또는 상호(기관명)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				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6									
7									
8									
9									
10									
11									
12									
13									
14									
15									
16									
17									
18									
19									
20									
21									
22									
23									
24									
25									

\* 구분코드 : 1. 중고자동차, 2. 기타 재활용폐자원